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395>

JCCT 2023-1-46

##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 A Study on Comparing the Veteran Affairs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박상혁\*, 왕승우\*\*, 이재건\*\*\*

Sang-Hyuk Park\*, Seung-Woo Wang\*\*, Jae-Geon Lee\*\*\*

**요약**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한민국, 보훈, 제도, 분석, 비교연구, 이론

**Abstract** Korea has been in a truce state for about 70 years, not an end-of-war country. Even in a situation with this specificity, Korea's veterans'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Korea's veteran policy lacks an "honor of veterans" system compared to veterans'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t is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discharged soldiers." After analyzing the major veterans' policy systems in the veterans' developed countries (U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expand the major anniversaries related to veterans and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awareness education on the promotion of vetera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cognize the pain and agony of division to the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d country-type veteran affairs system.

**Key words** : Republic of Korea, Veterans Affairs, System, Analysis, Comparative Study, Theory

#### 1. 서론

우리나라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도부터 2018년까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약,

10,088구가 수습되었으며 이중, 131분 만의 국군 전사  
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해발굴 대비 신  
원확인율은 약 1.3%로 매우 저조하여 신원이 어려  
운 실정이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사자 유해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해병대 2사단 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 25사단 장교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발굴은 많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사적 의의 및 교훈 계승과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국민 역량결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 셋째, 유해발굴 관점의 다변화와 발굴방법 개선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선진국의 보훈정책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 인식 및 출발점은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보훈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훈선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국가보훈의 이론적 고찰

지난, ‘보훈(報勳)’은 값을 ‘보(報)’와 국가에 대한 공훈, 공적 등을 뜻하는 ‘훈(勳)’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로서, ‘국가 보훈’의 줄임말이다[1]. 엄밀한 의미에서 ‘보훈’과 ‘국가 보훈’은 다른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관습적으로 통용되며, 보훈 자체가 국가 정책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훈 정책’의 줄임말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한다[2]. ‘보훈’이 국가 정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3]. 즉, 보훈의 통상적 영문표기는 “National Merit Reward”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데 대한 보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보훈은 우리 고유의 용어이다. 각종 연구서에 각국의 정책을 ‘보훈’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보훈부’, ‘보훈청’ 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의 보훈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보훈정책이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 대한 원호로부터 민간에게까지 통용되는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4].

한편, 우리나라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국가 헌신자에 대해서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5].

결국,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6], 이러한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작용으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있다[7].

## III. 세계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분석

### 3.1 미국의 보훈 제도

미국은 국립묘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현재, 미국의 국립묘지(National Cemetery)는 관할 기관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된다[8]. 우선,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국립묘지국(Nation Cemetery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2008년 현재 전국에 125개가 있으며[8], 이외에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국립공원관리처(National Park Service)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국립묘지가 있으며, 육군부(Department of Army)에서 관리하는 2개의 국립묘지가 있다[8]. 제대군인부 국립묘지국에서 관장하는 국립묘지는 우리나라의 현충원·호국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8]. 또한, 지난 1862년 7월 17일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국립묘지로 사용될 부지의 구입 권한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 해에 14개의 국립묘지가 최초로 설립되었다[8].

더 나아가 미국은 참전실종자 및 포로자에 대해 끝까지 귀환 노력을 하고 있으며[9], 지난, 1994년 12월 미군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에 불시착하여 하일 먼 준위가 사망하고 보비 홀 준위가 북한에 억류되자 클린턴 대통령은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특사로 임명, 평양으로 보내 송환 협상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한국전 유해 송환과 관련 1994년 6월 커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일성의 확답을 받아내는가 하면 1990년에서 1992년간 실종미군 유해 46구를 송환받으면서 1인당 북한에 1만 9500불을 지불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10], 이러한 미국 제대군인부 주요조직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미국 제대군인부 주요조직  
 Table 1. Major organiz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war veterans

구분	제대군인의료처	제대군인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	기타
인력	202,709명	13,479명	1,432명	7,104명
산하조직	- 병원 : 163개 - 진료소 : 850개 - 요양원 : 137개 - 정양원 : 43개 - 상담소 : 206개 - 정형·보철 : 39개 연구소	- 지방청 : 58개 - 대부센터 : 9개 - 교육보호 처리소 : 4개	- 국립묘지 : 130개	- 참모조직 등

출처 : 국가보훈처(2021) 재인용.

이러한 미국의 보훈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국민은 국가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 미국의 보훈제도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제대군인 및 그 유족 지원을 시작으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실시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미국 보훈문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1636년, Pilgrims of Plymouth Colony에서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초 시행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제대군인처가 내각(Cabinet)의 하나인 제대군인부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른다[11].

### 3.2 캐나다의 보훈 제도

캐나다 보훈제도의 관장부서는 제대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이며 제대군인부 산하기관은 5개 지방청, 31개 지청, 하나의 병원, 2개 정양원이 있다. 제대군인부의 총인원은 3,300명으로 본부 950명, 지(방)청 1,300명, 병원 950명, 위원회 1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9]. 지원 대상은 참전제대군인 또는 관련 사상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예산은 22억 8천만 불이며, 이중 보상금에 56.8%, 의료지원에 26.2%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9]. 상이연금은 복무와 장애간 관련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장애정도 및 범위에 따라 상이 등급을 0~100%로 분류하였고, 연금등급을 5단계(1/5~5/5)로 부여하여 연금등급과 상이등급을 곱하여 연금율을 결정하여 월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9]. 유족연금은 본인연금이 48% 이상인 경우에는 독신자 기본연금의 3/4 지급하며, 본인 연금율이 5~48%인 경우에는 본인 연금액의 1/2 지급하고 있다. 참전군인수당은 참전자중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9].

의료보호는 입원, 통원가료, 일반병원 위탁가료, 정양, 재활센터, 보철구 공급 등을 실시하며, 병원시설은 하나의 제대군인병원, 주정부 병원과 계약병상, 사회의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9], 직업훈련 및 자녀교육 보호, 제대군인 사회정착을 위한 토지분양제, 고령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9]. 또한, 각종 기념사업은 보훈 예산의 1.7%투입하는데, 전사자 명부(캐나다 의회), 제향군인회의 테리팍스 청소년훈련원 운영, 참전 해외전적지 순례단 운영 및 참전 기념시설물 관리 등을 실시한다[9]. 한편, 캐나다 제대군인부 사명(Mandate)은“전쟁 및 평화유지 활동 시기 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적격의 캐나다인들에게 시혜(Benefits)와 서비스(Services)를 제공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일”로 명시되고 있다[13].

### 3.3 호주의 보훈 제도

호주의 안장지원제도는 전사자 묘지관리와 기념물 관리, 참전 후 사망자에 대한 안장지원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다. 국립묘지는 주로 전사자 처리를 위한 묘지이다[8]. 전사자묘지 관리사무소는 호주와 영연방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묘지 및 기념물을 관리하고 필요한 새로운 기념시설 계획, 추진, 정보제공 및 관련 연구, 해외의 전사자 묘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8]. 전사자 묘지는 제1, 2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경우 전사지 인근 매장 원칙으로 주요 참전지인 유럽 및 동남아에 매장되어 있으며, 호주 내 묘지는 국내 훈련 중 사망자나 귀국 직후 사망한 군인이 안장되어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전적지 주변 묘지 인근 등에 실종자를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여 묘지가 없는 전몰자를 추모하고 있다[8]. 전사자 묘지에 대한 관리는 영국

국방부 산하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에서 총괄 관리하며, 호주 보훈부에서는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지역 소재 묘지를 관리하며 매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8]. 또한, 동위원회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전, 월남전 전사자는 전적으로 호주 보훈부 관할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8], 전사자가 아닌 상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시 묘지석 및 묘비 제공 등을 통해 예우하며,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Victorian Cross 수훈자와 상이 사망자이며 사망일시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지원하며[8], 이러한 호주 전쟁묘지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호주 전쟁묘지  
Table 2. Australia of war cemetery

지역	묘지	안장자수
Sydney	Sydney War Cemetery	734
Melbourne	Springvale War Cemetery	611
Brisbane	Lutwyche War Cemetery	347
Adelaide	Centennial Park War Cemetery	198
Perth	Perth War Cemetery	493
Hobart	Hobart War Cemetery	51
Launceston	Carr Villa War Cemetery	18
Northern Territory	Adelaide River War Cemetery	434

출처 : Australi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2021).

### 3.4 프랑스의 보훈 제도

프랑스의 경우 선양관련 제도는 매우 폭 넓게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8]. 특히, 프랑스라는 국가 이름으로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양운동을 펼치고 있으며[8],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기념행사 정책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근대 분쟁을 증언해 줄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이며 젊은 세대에게 공화 국민과 시민의식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8]. 또한, 프랑스 보훈제도는 민간인 전제회생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며[9],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훈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9]. 이미 1670년대 루이 14세 때 늙고 불구가 된 군인들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훈병원이 개설되었다. 이후 1871년 독일과의 전쟁시 희생자 지원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보훈제도가 마련되었다[9].

프랑스 보훈 문화의 특징은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9]. 만일 어떠한 전투가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사회적 에너지와 관심을 받게 할 수 없다[9]. 따라서 기억에 대한 요청은 보훈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승리한 전쟁이건 패배한 전쟁이건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전쟁은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수행한 주권적 행위이며, 국민들은 승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9].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오고 있으며[14] 이러한 프랑스 전쟁묘지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프랑스 전쟁묘지  
Table 3. France of war cemetery

묘지명	행정구역	안장자수
Amblyeny	Amblyeny	11,233
Cormicy	Cormicy	14,418
Minaucourt-Le Mesnil-Les Hurlus	Minaucourt-Le Mesnil-Les Hurlus	21,319
Sillery	Sillery	11,259
Souain-Perthes-Les Hurlus	Souain-Perthes-Les Hurlus	30,734
Ossuaire de la Gruerie	Vienne-le-Château	10,000
Douaumont	Fleury-devant-Douaumont	16,142
Metz	Metz	10,967
Cimetière des prisonniers de guerre	Sarrebourg	13,319
La Targette	Neuville Saint-Vaast	12,210
Notre-Dame de Lorette	Ablain-Saint-Nazaire	40,057

출처 : France Department of Defence(2021).

### 3.5 독일의 보훈 제도

서독의 보훈 정책은 지난,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과 함께 1991년 1월 1일 부로 신연방 지역(구 동독)에도 확대 적용되어 이 지역의 전제회생자에게도 보상금 신청을 통하여 건강상 장애 및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과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은 연금보험에 있어 동·서독간의 연금 제 평가를 통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일원화된 동독의 평균 연금액은 45년간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1991년 1월 기준 46.2%에서 1997년 7월 기준 85.2%로 향상되었다[15].

그러나,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의 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의하여 취득한 청구권과 승계권은 연금보험제도에 이상하도록 하여 청구권과 승계자 대신 근속기간과 수령액에 기준하는 연금제도로 대체하게 되었다[9]. 다만, 국가보위부 특별보훈제도 가입기간과 고위직의 특별보훈제도 가입기간은 연금산정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동독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연금제도는 통일 후 보훈 제도로

편입되지 않고 사회보장체계로 흡수되었고 슈타지 등 권력기관과 고위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였다[9]. 그 외 의료보호·장제지원 및 직업재활·교육지원·생계부조·정양보호 등의 보충적 프로그램은 서독제도를 확대·적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9]. 통합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구 동독하에서 정치적 이유,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급되었거나 희생된 사람들을 위하여 SED(동독사회주의 통일당)정권폭력 희생자 복권법을 제정하여 형사, 행정, 직업상의 복권과 보상을 실시하였고 구급자 지원법, 폭력희생자보상법, 폭력, 전쟁희생자 묘지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문화·유적의 원형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SED 희생자는 정치적 핍박을 목적으로 판결함으로써 범죄구성과 형량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로서 복권과 동시에 수감증 건강상 피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유가족이다[16]. 또한, 독일의 보훈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과 수당, 의료, 재활, 요양보호 등이 있으며 그 외 전쟁희생자 묘지가 있으며 국민슬픔의 날(Volkstrauer Tag)이라는 추모일이 있으나, 명시적인 기념행사는 없고 재향군인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9]. 독일의 보훈제도는 전쟁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금전적으로 원호하는 제도로서 병역의무제 도입과 함께 실시되었는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9]. 독일 보훈제도의 특성은 복무관련 범위를 민간인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국가적 차원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

#### IV. 결 론

본 연구의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즉,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대상이 되는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에 대해 분석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두 가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훈 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 관련 기념일은 현충일을 제외한 타 기념일은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으로 지난, 1953년 이후, 7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 예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재, 휴무일이 미지정된 ‘국군의 날’을 공식 국가 휴무일로 지정하여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순국선열의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학교 교과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교육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제도에 대한 교육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학창시절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훈문화’에 대한 가치, 이념 등 국가 주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결국,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를 영원히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훈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진국형 ‘보훈제도’를 착안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보훈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보훈선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K. Jung(2020). Improvement Directions and Expected Effects of Veterans Welfare Policy : Focusing on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of Veterans Welfare, Master's the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2011). Research Report.
- [3] J. S. Kim(2005). 『Korea Veterans Policy Theory』 ; South Korea.

- [4] K. S. Lee(2014). A Research on the Decision-Making Factor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in Structuring the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A Ph.D. thesis at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5] Y. O. Yoo(2011). Symbolism of Russian Veterans Policy,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10(1), pp. 73-108.
- [6] P. S. Choi(2001). 「Development Direction of Veterans Policy on Veterans Affair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p. 1-2.
- [7] J. S. Kim, J. M. Kim(2004). Exploring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Patriotism Spirit,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Academic Seminar Report, p.29.
- [8] W. S. Suh(2011). Comparative Research on Promote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Leading Nation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10(1), pp. 43-72.
- [9] K. W. Park(2004). A Developmental Study on Korea's Veterans Policy, Master's thesis at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0] S. H. Kim(1998). Changes in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2003). Report. pp. 260-261.
- [1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2004). Report. p. 128.
- [13] [www.pvaa.go.kr/data/open-info](http://www.pvaa.go.kr/data/open-info).
- [14] Y. O. Yoo(2011). A Study on the Transfer Method of Veterans to National Merit, Korea Association of Military Studies, p.162.
- [15]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996). 6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and 6 years of East German Reconstruction, p. 440.
- [16] S. H. Park(1999).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Veterans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p. 19-22.